

과 업 지 시 서

1. 용역명 : 용성면 차집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

2. 목 적 : 경산시 용성면 차집관로 신설공사로 자인처리구역(용성처리분구)의 수질환경개선과 공공의 복지증진 및 하수차집의 처리효율 증대를 위하여 하수관거의 확장 사업을 시행함

3. 용역의 범위

○ 위 치 : 용성면 일광리, 고은리 일원

○ 오수관(차집관거) 신설 : L = 5.70 km

○ 지반조사 : 3 공

○ 수도노선 측량 : L = 5.70 km

4. 과업수행기간 : 착수일로 부터 6 개월간으로 한다.

5. 용역일반사항

1) 일반사항

가.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조속히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전에 착수계, 과업수행계획서, 대리인계, 용역수행자 명단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보안각서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다. 과업 진도보고는 매10일마다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과업진척 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.

라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경비는

도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.

- 마. 본 과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.
- 바. 본 설계용역 완료후에도 공사중 설계상 하자가 발생할 시는 도급자가 수정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사. 과업완료시 납품 10일전에 우리시의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수정, 보완하여 계약 완료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아. 과업과 관련된 각종 인·허가서류는 과업완료전 또는 완료후라도 발주청에서 요구할 시 제출 및 기관 협의를 하여야 한다
- 자. 과업의 최종 완료시에는 필요에 따라 각측점 및 변화구간의 사업부지 경계말목을 현장에 박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6. 측 량

가. 측량기본

- 측량은 측량법의 규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.
- 측량을 실시하기전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협의후 현지 측량을 실시한다.
-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한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.
- 지적도 및 임야도는 우리시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등사하고 현황도를 작성한다.
- 측량 기본점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을 활용하고 GPS측량점을 보조 활용한다.

나. 평판측량(지형 현황측량)

- 제외지와 제내지 좌, 우 각 20 ~ 50m 이내의 지형(산악, 하천 및 기타 구조물과 공작물등)을 측정 표시한다.
- 평면도의 축척은 1:1200으로 구조물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수준점(B.M) 및 가수준점(T.B.M)의 위치와 표고등을 명시하고 설치 위치는 장시일 보존이 가능한 지형 변형이 없는곳에 설치한다.

다. 종단측량

- 하천의 중심 및 측점 중심에 따라 측량하되 반드시 연장 500m마다 변동하지 않는 목표물에 T.B.M을 설치하여야 하며,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많은 지점과 구조물 설치점, 곡선부등에는 중간점을 설치하도록 한다.
단. 측점간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수행한다
-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량하여 평균치에 의하되 소정의 오차 범위 한도이내 이어야 한다.
- 종단면도는 원도 1m/m 방안지를 사용하고 횡방향 1:200, 종방향 1:600으로 하여 구조물의 위치, 현황, 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한다.
- 시공계획서의 결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한다.

라. 횡단측량

- 하천측량은 하천 제외지와 제내지 20 ~ 50m 이상을 세밀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.
- 원도는 1m/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:100으로 한다,
- 단면 기입순서는 하에서 상으로 하고 단면이 2이상일 경우 좌에서 우측으로 한다.
-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, 계획고, 절.성토고 및 물량을 기입한다.

7. 설계도서의 작성

-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지방서 및 '13경산시 설계기준,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.
단, 과업수행지역이 하천이므로 관련법 또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설계서 작성에 있어 자료는 인용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작성은 내역서, 구조계산서, 수리계산서, 시공상세도, 지방서, 공정 계획, 수량산출서, 설계예산서 등을 포함한다.
- 설계도면에는 공사명, 축척, 방위, 세부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설계도서중 수량산출서등은 엑셀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내역서 및 일위대가, 단가산출서는 설계 적산프로그램인 EST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모든 도면은 축척 1/1의 CAD로 작성하되 경산시 GIS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
8. 설계변경등의 조건

- 본 과업의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설계 결과 사업비 및 측량연장의 증감에 따라 우리시의 사전 승인하에 설계 변경 할 수 있다.
- 기타 우리시의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할 수 있다.

9. 성과품납품

가. 측량원도 (삼각및 다각망도 계산수부, TBM위치 표시도및 성과, 야장포함)

나. 실시설계

- 설계원도(트레이싱) 1부
- 실시설계도(청사진) 12부
- 설계서(예산서, 수량및단가산출서, 일괄편철)12부
- 수리및 구조계산서 12부
- 특별시방서 12부
- 실시설계 보고서 12부
- 실시설계 성과가 수록된 CD 각 2 장 (도면 PDF변환파일 포함)
- 타법에 따른 관련협의 도서 각 12부
- 용역 준공 전,후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
- 기타 과업수행상 감독관 요구자료
- 납품도서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토록 한다.

10. 용역대가의 지급

본 용역의 대가지급은 납품도서 검수시 용역 완료로 하여 지급토록 한다.